

##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사용에 관한 업무 협약서

본 협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사자는 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대표” (이하“계약자”라 한다)와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협약 목적)

본 협약은 “계약자”와 “계약 상대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장례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례문화의 허례허식을 타파함으로써 건전한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력 내용)

“계약자”와“계약 상대자”간에 상호협약을 체결함으로써“계약 상대자”의 소속 임,직원과 임,직원이 의뢰한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사용자에게 다음 각 항의 할인을 제공한다.

- ①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직영 행사시  
빈소 사용료 50%
- ② 상조, 개인 장의사 이용 시  
빈소(접객실) 사용료 50% 할인
- ③ 김해시 관내 사체 운구 비용 무료
- ④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로비 내 MOU 업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귀 재단을 게시하여 적극 홍보

### 제3조(협약 기간 및 해지)

- ①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으면 자동 1년 연장한 것으로 본다.
- ② “계약자”와“계약 상대자”는 협약한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계약자”와“계약 상대자”는 업무협약 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부득이 업무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상호 간에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4조(정보의 활용)

“계약자”와“계약 상대자”는 각자의 업무 홍보를 위해 상호 간의 업무 정보를 활용할 경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자”와“계약 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기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협약의 증거로써 협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3년 04 월 21 일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김해시복지재단  
Gimhae Welfare Foundation

조은금강병원장례식장  
대표 이인아



재단법인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정욱

